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44

발의연월일: 2024. 9. 13.

발 의 자: 송옥주·이해민·권칠승

이수진 · 김남희 · 박해철

이기헌 • 박희승 • 이병진

한정애・박 정・한민수

박홍배 · 이용우 · 안태준

정을호 • 전종덕 의원

(179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상 파견대상업무로 적합한 32개 업종에 대해서만 파견근로자 사용을 상시 허용하면서, 예외적으로 기업이 예상하지 못한 시장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나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파견근로자 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예외 규정을 악용한 불법파견이 만연함에 따라 위험의 외주화가 끊이지 않고 있음. 최근 6월 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건을 일으킨 회사의 불법파견 사실이 적발되어 파견근로자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예외규정으로 사실상 전면 허용되고 있는 근로자파견사업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마련하여 사용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근로자 파견제도의 악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6조).

법률 제 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
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출산 · 질병 ·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 2.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사용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해당 사유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제2항 전단 중 "파견기간을"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파견기간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단서 중 "3개월의"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3개월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ㆍ	②
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	
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	
<u>요가 있는</u> 경우에는 근로자파	
견사업을 할 수 있다.	
<u><신 설></u>	1.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
	원이 생긴 경우
<u><신 설></u>	2.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사용사업주가 고용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
	우(해당 사유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후 6개월이 지나지 아
	<u>니한 경우는 제외한다.)</u>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파견기간) ① (생 략)	제6조(파견기간) ① (현행과 같
	<u></u> 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	2
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u>파</u>	

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생 략)
- ④ 제5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 파견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생략)
- 2.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해당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승	<u> </u>
파견기간을	
③ (현행과 같음)	
4	
1. (현행과 같음)	
2	
<u>고용노동부장</u>	관의 승인
<u>을 받아 3개월의</u>	
,	